



제조물 책임법(PL법)시행과 관련한 골판지포장 제조사 책임론 분석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안용수 상무이사

- I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미
- II . 제조물 책임이 제기된 이유
- III.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쟁점 비교
- IV . 골판지포장에 대한 제조물 책임 범주
- V .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 전략

I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 책임법(PL법 : 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등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조물 책임법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등을 포함해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

으며 '90년대에 들어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건의되어 1999년 12월 16일 PL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II. 제조물 책임이 제기된 이유

제조물 책임법(PL법)의 문제는 우리 나라 수출 대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부로 체험해온 사안으로서 미국, 일본, EU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해온 대기업들은 PL법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PL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 예방책에 고심하고 있는 터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지구촌화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 수출기업도 세계화에 대비하여 제품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예방책이 중요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거액의 배상금 지불은 물론, 기업 생존을 가능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 소송으로 27만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제조사들이 25억 달러의 배상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월 남전 때 살포된 제초제가 피부 질환 등을 일으켜 제조 7개사가 138천만 달러에 화해하였고, 유방 성형 수술에 쓰이는 실리콘젤이 면역 체계 파괴 등 부작용을 일으켜 PL 소송에 걸린 제조사중 하나인 다우코닝사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이렇듯 선진 각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PL법이 일반화

되었으며 소송에 걸린 회사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PL 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고, 대부분 수출품은 타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 받는데 반해 국내 소비자는 PL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의 문제 해소와 우리 기업도 제품 생산에 있어서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L법 제 1조 목적에서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련된 제조사 등의 적정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조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이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III.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차점 비교

현행 민법 제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가해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반면, PL 법상 제조물 책임은 결함 책임 취지의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다 쉽게 배상을 받게 하는 무과실 책임의 피해자 보호를 확대



한 특별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과실 여부를 입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앞으로 PL법은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책임을 지는 자는 당해 제품을 제조한 자, 가공한 자를 말하며 OEM등의 경우에는 1차로는 주문자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 제조자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단, 그 제품에 결함 여부는 규명되어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 중 한가지만 규명되면 된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 : 당해 제품이 갖추어야 할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함으로서 흔히 불량품이라고 한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 : 안전한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자가 열등한 설계를 채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셋째, 경고 표시상의 결함 : 제조물에 내재한 위험 또는 제품 사용시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함을 말한다.

그리고, PL법은 특별법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에 의한 제조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하여 PL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에 의하면 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IV. 골판지포장에 대한 제조물 책임 범주

1. 골판지포장이 PL법 적용 대상 제조물인지의 여부

PL법 제 3조(제조물)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골판지 상자 자체가 어떤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소비 목적물 (제품)의 안전보호와 운반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골판지 상자 자체가 제조 가공된 동산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상자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배상 책임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소멸시효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서 가령 골판지 상자를 납품 받은 제조업자가 내용물 포장 후 장기 보관한 상태에서 유통 시킨다면 당초의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골판지포장의 제품 결함성과 재산적 피해

PL법 제 6조에서는 연대책임 의무를 강제



하고 있다. 즉,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골판지 포장재 자체는 제품 공급에 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물의 안전 운송, 보관 등의 목적 제품으로 내용물 제품 결함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골판지 포장은 제조물 책임의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다만 골판지 포장을 필요로 하는 발주자의 내용물 유통 조건등 요구사항을 골판지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치 않아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요구사항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부과 받게 되고 내용물 발주자와 연대하여 재산적 피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골판지 포장의 제품 안전성과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는 다른 제품에 비하여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제조물 책임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인 만큼, 골판지 상자의 결함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현재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 설령 지금까지는 골판지 상자의 결함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급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만 치부하여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생각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른

다.

예컨데 골판지상자의 강도상의 결함 내지는 스텟칭 불량, 접착불량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훕겨져 나와서 타박상 내지는 기타의 상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고 골판지상자 자체를 참고에 통상적으로 다단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표면지의 미끄럼 현상으로 적재된 골판지 상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PL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골판지원지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용물의 변형을 가져와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물 책임이 적용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V.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 전략

1. 제품 결함(표준 강도 미달)대책

PL법상 제품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 경고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골판지 상자의 표준 강도 미달은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은 골판지 상자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원인이 되는 원지의 수분편차, 후박불량, 평량 불균일, 표준강도의 미달 등으로 접착불량, 골 불량으로 이어져서 국립기술표준원이 규정한 외부 포장용 골판지의



품질 인증 규격에 미달 하는 제품이 생산되어, 양면 골판지 및 이중 양면 골판지의 각 종별 파열 강도와 압축 강도의 함량 미달 제품이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계의 성능, 생산공정별 작업자의 숙련도와 기타 다른 요인들도 부가될 수 있다.

문제는 PL법 시행 전에는 이러한 표준 강도 미달 제품이 거래선의 용인아래 납품되어지고 유통과정에서 설사 약간의 흠이 발견되어도 무마되는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으나, PL법 시행 후에는 직접적인 배상 청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PL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까지 지금부터 대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는 ISO 9000 시리즈와 연계하여 품질 관리와 품질보증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KS 규격에 의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대다수의 기업이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ISO 9000 시리즈는 고객의 입장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로 관리체계 또한 문서화하고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KS 규격은 보증대상이 상품 및 생산자의 품질보증이지만 ISO 9000 시리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의 보증이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에 의한 표준 강도 미달 대책으로 설계상의 결함이란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채택하지 않고 열등 설계를 하였을 경우다. 골판지상자는 내용물의 종류와 크기,

무게, 성분과 안전유지의 최대 효율등을 감안하여 설계하게 된다. 물론 현재 각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포장 치수와 재료, 포장 방법, 봉합 및 결속,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설계가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최상의 상태인가 재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각 업체별 골판지 상자의 제조 규격이 납품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포장재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데이터를 기록 보존하고 조합 등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합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열등 설계로 판명된 제품은 수정 설계에 의하여 리스크 저감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포장제한 및 취급, 보관, 발주 계약서의 거래 대책

골판지포장과 목상자의 규격 제한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포장상자의 개념은 골판지상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골판지상자 또한 음식료의 경량포장에서부터 냉장고의 중량포장까지 해당된다. 경량포장의 경우는 골판지상자의 포장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량 내용물의 포장인 경우 PL법과 연계해 볼 개연성이 있다. 냉장고 상자의 경우 하판은 목재를 사용하여 제품의 중량을 지탱하도록 하고 오직 내용물의 흡집 방지를 위한 보호



측면에서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다. 중량물의 보관, 운송은 견고성을 감안할 때, 목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목상자의 경우는 포장 비용이 골판지상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PL법상 제품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상자로 전체 포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 설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원가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골판지상자로 대체된 경우이다. 그럼 냉장고가 물유의 이동 과정에서 중량을 견뎌내지 못하고 측면 파손되어 대인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가져 왔다해서 중량 제품에 대한 골판지상자 포장을 포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골판지상자로 대체 가능한 내용물은 전체를 골판지포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취급, 보관,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포장 상자에 명확히 경고하고 보관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물 장기보관의 경우는 (내용 연한을 명시) 포장 강도의 저하로 취급주의 경고를 표시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발주계약서의 경우는 해당 내용물의 적성에 따라 엄격한 포장치수와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봉합 관계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판지상자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PL법상 배상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움을 첨언하고 싶다.

3. 포장강도 품질표시, 취급주의 표시 인쇄의 적정화 대책

제품 결함의 세 번째 열거된 경고 결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고 결함은 말 그대로 취급상의 주의 경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제조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는 골판지상자 자체에 대한 경고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용물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골판지상자 표면에 경고하고 있고 소비자는 응당 내용물의 취급상 문제점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판지상자 자체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의 주의방법을 경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습한 곳의 보관 및 수침시에는 포장지의 강도를 보증할 수 있는 한계를 경고문에 표기하여 예방 대책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용물 보호와 물유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설계에 의한 포장 강도의 품질 규격 표시를 하되, 인쇄는 웁 날개 등 현재 발주회사에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골판지 제조 회사명과 함께 경고 사항을 의사전달이 쉽게 간단 명료한 문구로 경고하면 될 것이다. 이제 내년 7월1일부터 PL법이 시행되면 국내 회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피해도 쉽게 배상받는 길이 열리는 반면, 제조자는 제품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되며, 결국 결함 제품 생산은 감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판지 포장 산업의 경우 골판지상자 결함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위험에 대비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 도산 상태까지도 예상되므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골판지포장 조합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분석 자료에 따르면 골판지포장업체에서는 PL법의 입법사상은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참가 경험도 전무하였다.

아울러 제품수주시 주문서를 받은 비율은 평균 58%였으며, 이중 품질기준을 지정하여 수주되는 비율은 42%로, 전체의 24.4%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범골판지포장업체 차원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

끝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PL 지원 대책으로 PL 대응 시스템 구축 요령

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PL 대책의 추진 확산을 위하여 구조개선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PL 진단, 지도 및 시험, 검사 지원으로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신뢰성 향상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물의 안전성 시험 검사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PL 사고 대비 활동 지원으로 PL 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가 PL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업종, 규모, 제품의 안전도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니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